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 19 선고 2021가합1327 판결 [대위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말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원

피 고 1. B조합

2. C조합

3. 주식회사 D

4. E

5. F

6. G

변 론 종 결 2021. 10. 27.(피고 1. 2.에 대하여) 2021. 12. 22.(피고 3. 4. 5. 6.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2. 1. 19.

주 문

1. 소외 H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2, 3번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 피고 G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7. 1. 9. 접수 제47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조합은 별지 목록 순번 1, 2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9. 12. 24. 접수 제327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다. 피고 C조합은 별지 목록 순번 1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04. 3. 26. 접수 제38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같은 등기소 2004. 3. 26. 접수 제3802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D은 별지 목록 순번 3,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1999. 10. 29. 접수 제15768호 및 위 같은 등기소 2002. 12. 24. 접수 제11684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조합, 피고 C조합, 피고 E, F, G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한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조합, 피고 C조합, 피고 F, G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E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 소외 H는 I의 피고 D에 대한 금전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H 소유인 별지 목록 순번 3, 4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의 라.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피고 D 앞으로 마쳐준 사실, 그 후 위 피담보채무는 모두 변제된 사실, H는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고 원고는 H에 대하여 원금 약 14억 원에 달하는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을라 제1호증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H를 대위하여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원고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의 대위청구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의 대위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선택적 청구원인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근정, 판사 함철환, 판사 고석범

